

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9조제2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(현행조례 내용으로 환원)

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대기환경보전법, 수질환경보전법, 폐기물관리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

## 수정안 조문대비 표

서 울 특 별 시 도 시 계 획 조례 중 개 정 조례 안

서 울 특 별 시 도 시 계 획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 정 한다.

제38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 한다.

12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

## 신·구조문대비 표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